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예산으로 지급하는 정책수당을 지류형 지역화폐로도 발행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정책수당의 지급 편의를 제고하고 관광객 등의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여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지류형 지역화폐 발행 근거(안 제4조, 제4조의3)

○ 가맹점 준수사항(안 제6조의2)

○ 판매대행점 수수료 관련 사항(안 제9조제4항)

○ 지류형 지역화폐 취급 관련 사항(안 제9조의2, 제9조의3)

□ **개정조례안**: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없음

□ **예산수반 사항**: 비용추계서 별첨

□ **사전예고 결과**: 예정

○ 입법예고 기간 : 2026. 11. 27. ~ 12. 17.(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예정

○ 심의회 개최일: 2026. 12월 중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현행 조례

○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심사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를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화폐에 기재된 가액에 따라 가맹점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역화폐는 카드형(전자적 방식의 발행을 포함한다)으로 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류형으로도 발행할 수 있다. 지류형의 권면금액은 1천원 이상 1만원 이하로 하며, 구체적인 금액은 시장이 정한다.

④ 지역화폐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화폐의 명칭
2. 카드번호 및 유효기간(카드형)
3. 권면금액 및 발행 번호(지류형)
4. 지역화폐의 이용 안내
5. 그 밖에 시장이 지역화폐의 발행 및 유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지류형 지역화폐의 발행) 시장은 지류형 지역화폐 발행 시 유가증권의 위조·변조 및 부정 발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문업체와 제조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제3항제4호 후단 중 “파주시”를 “시”로 한다.

제6조제4항제4호 중 “파주시에”를 “시에”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지류형 지역화폐 소지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1. 권면금액(지류형 지역화폐를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총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권면금액의 100분의 60

2. 권면금액이 1만원 이하인 경우: 권면금액의 100분의 80

② 가맹점은 지류형 지역화폐를 받는 경우에는 위조·변조 여부 및 발행 번호의 식별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제2항 중 “파주시”를 “시”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판매대행점에 지역화폐의 판매·환전 등

대행 업무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2장에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지류형 지역화폐의 환전) ① 가맹점이 아니면 지류형 지역화폐를 판매대행점에서 환전할 수 없다.

② 지류형 지역화폐의 환전 절차 및 가맹점별 환전 한도 등 환전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지류형 지역화폐의 위조·변조 여부를 확인한 후 환전하여야 하며, 위조·변조되었거나 발행 번호를 식별할 수 없는 지류형 지역화폐의 환전을 거부할 수 있다.

제9조의3(지류형 지역화폐의 폐기 등) ① 판매대행점은 환전한 지류형 지역화폐를 지불 처리(지류형 지역화폐가 환전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음을 표시하기 위하여 직인을 찍거나 구멍을 뚫는 것 등을 말한다)하고 일자별, 권면금액별로 환전일부터 5년간 보관(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매대행점은 그 보관 장소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중복 지급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문제된 지류형 지역화폐를 제1항에 따른 보관 기간 동안 색출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시장은 판매대행점 중 지류형 지역화폐의 인수, 보관, 교부, 정산, 폐기 등을 총괄하는 판매대행점(이하 “총괄판매대행점”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④ 판매대행점은 제1항에 따른 보관 기간이 지난 지류형 지역화폐를

그 보관 기간이 만료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총괄판매대행점에 인계하고, 총괄판매대행점은 이를 담당 공무원의 입회하에 일괄 폐기처분한 후 폐기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민생경제과 ☏ 940-4522
입 안 자	민생경제과장	윤 은 주
	민생경제팀장	조 선 예
	담 당 자	방 성 국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역화폐의 발행 등) ① 시장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 형태의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	제4조(지역화폐의 발행 등) ①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화폐에 기재된 가액에 따라 가맹점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역화폐의 종류는 카드형(전자적 방식의 발행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지역화폐의 명칭 2. 카드번호 및 유효기간 3. 지역화폐의 이용안내 4. 그 밖에 시장이 지역화폐의 발행 및 유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역화폐는 카드형(전자적 방식의 발행을 포함한다)으로 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류형으로도 발행할 수 있다. 지류형의 권면금액은 1천원 이상 1만원 이하로 하며, 구체적인 금액은 시장이 정한다.
<신 설>	④ 지역화폐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화폐의 명칭 2. 카드번호 및 유효기간(카드

	형) 3. 권면금액 및 발행 번호(지류형) 4. 지역화폐의 이용 안내 5. 그 밖에 시장이 지역화폐의 발행 및 유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⑤ (생 략)	⑤·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신 설>	제4조의3(지류형 지역화폐의 발행) 시장은 지류형 지역화폐 발행 시 유가증권의 위조·변조 및 부정 발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문업체와 제조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화폐 활성화 시책) ①·② (생 략) ③ 시장은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거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가맹점의 지역화폐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이 경우 지원액은 최대 50만원 이내로 하고, 지원 대상은 전년도 연매출 5	제5조(지역화폐 활성화 시책)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1. ~ 3. (현행과 같음) 4. ---------- --------. ---------- ---------- ----------

억원 이하 가맹점(전년도 및 당해연도에 파주시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으로 폐업, 다른 시·군·구로 이전, 제한업종 등 제외)으로 한정한다.	---------- 시----------
제6조(가맹점의 등록 등) ① ~ ③ (생 략)	제6조(가맹점의 등록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법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업소의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④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파주시에 법인의 본점을 두지 않은 법인 사업자의 직영점	4. 시에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조의2(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지류형 지역화폐 소지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1. 권면금액(지류형 지역화폐를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총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권면금액의 100분의 60 2. 권면금액이 1만원 이하인 경우: 권면금액의 100분의 80 ② 가맹점은 지류형 지역화폐를 받는 경우에는 위조·변조 여부 및 발행 번호의 식별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등) ① (생 략) ②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파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③ (생 략) <신 설>	제9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판매대행점에 지역화폐의 판매·환전 등 대행 업무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9조의2(지류형 지역화폐의 환전) ① 가맹점이 아니면 지류형 지역화폐를 판매대행점에서 환

		전할 수 없다. ② 지류형 지역화폐의 환전 절차 및 가맹점별 환전 한도 등 환전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지류형 지역화폐의 위조·변조 여부를 확인한 후 환전하여야 하며, 위조·변조되었거나 발행 번호를 식별할 수 없는 지류형 지역화폐의 환전을 거부할 수 있다.
<신 설>		제9조의3(지류형 지역화폐의 폐기 등) ① 판매대행점은 환전한 지류형 지역화폐를 지불 처리(지류형 지역화폐가 환전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음을 표시하기 위하여 직인을 찍거나 구멍을 뚫는 것 등을 말한다)하고 일자별, 권면금액별로 환전일부터 5년간 보관(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매대행점은 그 보관 장소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중복 지급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문제된

	지류형 지역화폐를 제1항에 따른 보관 기간 동안 색출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시장은 판매대행점 중 지류형 지역화폐의 인수, 보관, 교부, 정산, 폐기 등을 총괄하는 판매대행점(이하 “총괄판매대행점”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④ 판매대행점은 제1항에 따른 보관 기간이 지난 지류형 지역화폐를 그 보관 기간이 만료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총괄판매대행점에 인계하고, 총괄판매대행점은 이를 담당 공무원의 입회하에 일괄 폐기처분한 후 폐기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관계법령발췌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2. 27.] [법률 제21030호, 2025. 8. 26.,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랑상품권”이란 지역상품권, 지역화폐 등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가맹점(이하 “상품권발행자등”이라 한다)에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

제4조(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④ 그 밖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종류, 권면금액, 기재사항 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9조(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 가맹점이 아니면 지역사랑상품권을 판매대행점에서 환전할 수 없다. 이 경우 환전대행가맹점은 개별 가맹점을 위한 경우에만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할 수 있다.

제10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② 개별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가 권면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

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지역사랑상품권의 재발급 등) ① 지역사랑상품권을 소지한 자가 지역사랑상품권의 재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지역사랑상품권이 훼손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한 지역사랑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상품권발행자등은 지역사랑상품권의 재발급과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한 지역사랑상품권임은 알 수 있으나 그 지역사랑상품권의 종류, 금액 또는 수량 등이 불명확한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는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최저 가격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재발급 받거나 사용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2. 27.] [대통령령 제36113호, 2026. 2. 19., 일부개정]

제3조(지역사랑상품권 잔액의 환급)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80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4조제3항, 제4조의3, 제9조제4항

나. 비용 발생 요인

○ 지류형 지역화폐 발행 및 관리시스템 이용료, 판매대행점 환전수수료, 홍보비 등

다. 비용추계서 미 작성 사유

○ 해당없음.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정책수당 지급 편의성 제고 및 관광객 등의 지역 내 소비 촉진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산 식	예산액	비고
합 계		51,943천원	
지류형 상품권 제작	1매당 140원 × 100,000매	14,000천원	2028 이후 미반영 (연도별 수요조사에 따름)
통합관리시스템 사용료	1개소당 1년 488,400원 × 48개소	23,443천원	
판매대행점 환전수수료	3억 × 1.5%	4,500천원	
홍보비 및 일반관리비	각종 홍보물품 제작	10,000천원	2028 이후 3,000천원

(단위: 천원)

구 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계
총 소요액	51,943	30,943	30,943	30,943	30,943	175,715

다. 재원조달방안 : 2027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해당없음.

4. 작성자: 민생경제국 과장 윤은주 민생경제팀장 조선예 담당 방성국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파주시 지역화폐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역자금의 지역 내 사용을 통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화폐”란 발행자인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발행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제2호에 따른 가맹점에게 이를 교부 또는 제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해당 가맹점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2. “가맹점”이란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로 지역화폐를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판매대행점”이란 시장과 제8조제2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

화폐의 보관・판매, 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화폐의 발행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지역화폐의 관리·운영

제4조(지역화폐의 발행 등) ① 시장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 형태의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지역화폐의 유통지역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일원으로 하되, 시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통지역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역화폐의 종류는 카드형(전자적 방식의 발행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지역화폐의 명칭
2. 카드번호 및 유효기간

3. 지역화폐의 이용안내

4. 그 밖에 시장이 지역화폐의 발행 및 유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법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정책적 지원을 위한 발행 등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발행일부터 3년으로 단축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지역화폐의 발행규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의2(지역화폐의 자금관리) ① 시장은 사용자가 지역화폐를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자금,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지역화폐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지역화폐를 발행·판매·환전하기 위한 자금(이하 “지역화폐 운영자금”이라 한다)을 보관·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시 금고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지역화폐 운영자금을 시 금고에 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4조의2에 따라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 체결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지역화폐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재정으로 귀속한다.

③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주기적으로 지역화폐 운영자금의 변동내역 및 잔액을 확인하게 하는 등 지역화폐 운영자금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반기별로 지역화폐 운영자금의 보유·관리 현황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화폐 활성화 시책) ① 시장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시상금, 장려금, 맞춤형 복지혜택, 인센티브 등의 전부나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고, 시 일원에서 개최하는 공연, 전시회, 축제 등 각종 문화행사 이용자에게 지역화폐를 교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역화폐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판매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재난발생, 경기침체 등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시책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할인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거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5. 7.>

1. 지역화폐 할인판매 및 구매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2.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각종 홍보·마케팅·행사 등의 개최 및 지원
3. 가맹점의 지역화폐 운영에 필요한 물품 등의 지원
4. 가맹점의 지역화폐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이 경우 지원액은 최대 50만원 이내로 하고, 지원 대상은 전년도 연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전년도 및 당해연도에 파주시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으로 폐업, 다른 시・군・구로 이전, 제한업종 등 제외)으로 한정한다.

제6조(가맹점의 등록 등) ①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업태 및 종목, 사업장 소재지 등의 정보를 포함한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운영대행사를 통하여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록신청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시장은 가맹점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조직 및 기관을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2. 「파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정한 사회적경제조직의 대표자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구성된 상인조직
4. 제1호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차시설 등을 운영하는 사람 또는 시(시의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한다) 및 시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여 수행하는 기관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또는 조직 및 기관

④ 시장은 법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업소의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사행성게임물 영업소
4. 파주시에 법인의 본점을 두지 않은 법인 사업자의 직영점
5. 그 밖에 시장이 지역화폐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업소

⑤ 가맹점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① 시장은 가맹점이 법 제8조제1항의 각 호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6조제3항에서 정한 가맹점의 등록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제6조제4항 각 호에서 정한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업종 또는 업소를 영위하게 된 경우
3. 가맹점이 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가맹점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가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가맹점의 재등록 제한기간을 둘 수 있다.

제8조(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위탁) ① 시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역화폐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지역화폐의 발행·유통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
2. 지역화폐의 발행·유통 시스템의 유지·보수에 관한 업무
3. 지역화폐 모바일 앱 개발·관리
4. 그 밖에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제4호에 따라 선정된 업체에 위탁 할 수 있다.

제9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등) ①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지역화폐의 보관·판매·환전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협약 기간 및 변경
2. 사무의 범위

3. 사업의 수행

4.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파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지역화폐의 판매량, 재고량 등에 대한 현황자료를 매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3장 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10조(운영협의회의 설치) 시장은 지역화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파주시 지역화폐 운영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역화폐 발행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 성(性)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

고 당연직 위원은 협의회의 기능과 관련 있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1. 파주시의회 의원 1명
2. 소상공인 지원 관련 공공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지역화폐 분야 또는 유통 활성화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지역화폐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5조(준용)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수당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9. 3. 29. 조례 제14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6. 12. 조례 제15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12. 18. 조례 제165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맹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한 자는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자로 본다.

제3조(판매대행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영대행사 협약을 체결한 행위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판매대행점 협약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2022. 12. 28. 조례 제18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2. 9. 조례 제18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 5. 7. 조례 제2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6-71		
자치법규명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윤수진
주관부서	민생경제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방성국
평가결과 통지일	2026. 11. 23.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	-		-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table>
<tr><td>관리번호</td><td colspan="4">2026A경기파주071</td></tr>
<tr><td>정 책 명</td><td colspan="4">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td></tr>
<tr><td rowspan="3">소관부서</td><td>기관명</td><td colspan="3">경기도 파주시</td></tr>
<tr><td>부서명</td><td colspan="3">민생경제과</td></tr>
<tr><td>담당자명</td><td>방성국</td><td>전화번호</td><td>031-940-4522</td></tr>
<tr><td>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td><td colspan="4">2026년 11월 20일</td></tr>
<tr><td>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민생경제과)</td><td colspan="4">- 조례 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td></tr>
<tr><td rowspan="2">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
책임관)</td><td colspan="4">■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td></tr>
<tr><td colspan="4">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와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td></tr>
<tr><td>검토의견
반영계획서</td><td colspan="4">해당 없음</td></tr>
</table>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6년 11월 23일

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권문영/031-940-8684)

민생경제과장 귀하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	
2. 소관부서	부서명	민생경제과
	담 당	팀장 조선예 담당자 방성국
3. 관련법령 등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4. 주요골자	○ 지류형 지역화폐 발행 근거(안 제4조, 제4조의3) ○ 가맹점 준수사항(안 제6조의2) ○ 판매대행점 수수료 관련 사항(안 제9조제4항) ○ 지류형 지역화폐 취급 관련 사항(안 제9조의2, 제9조의3)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은 예산으로 지급하는 정책수당을 지류형 지역화폐로도 발행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함으로써 정책수당의 지급 편의를 제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예산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권성원(4171)	